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1-07-13

서 울 고 등 법 원

제 8 - 3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	2020누57839 취득세부과처분취소
원고, 항소인	A
	소송대리인 변호사 [redacted]
피고, 피항소인	[redacted]구청장
제 1 심 판 결	서울행정법원 2020. 9. 10. 선고 2019구합85539 판결
변 론 종 결	2021. 4. 9.
판 결 선 고	2021. 5. 7.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가 2018. 4. 30. 원고 및 B에게 한 취득세, 지방교육세, 농어촌특별세 합계 55,191,270원(가산세 포함)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1-07-13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,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, 원고의 주장을 관련 법리와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.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, 아래 2. 항과 같이 해당 부분을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, [별지]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,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

○ 제1심판결문 제6쪽 제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.

『[이 사건 빌라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M, N(중복) 유치권에 기한 경매 사건에 관하여, 원고와 B은 위 법원 O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, 위 법원은 2020. 12. 4. 위 신청을 기각하였고,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1. 1. 27. 그 항고를 기각하였으며(위 법원 2020라1245 결정), 위 결정은 2021. 2. 5. 그대로 확정되었다. 한편 위 경매사건은 매각기일이 지정되었다가 변경, 추정되었다.]』

○ 제1심판결문 제6쪽 제8 내지 10행의 "원고로서도 공사대금채무의 변제 등 이 사건 유치권 소멸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 이 사건 주택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였다고 할 것인바"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.

『원고로서도 공사대금채무의 변제 등 이 사건 유치권 소멸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 이 사건 주택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감정금액인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1-07-13

959,000,000원(을 제5호증 참조)의 약 48.8%인 467,999,000원에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였다고 할 것인바』

○ 제1심판결문 제7쪽 제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.

『[P는 서울중앙지방법원 Q 임의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빌라 R호를 매수한 사람인데, 이 사건에서의 원고 주장과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피고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다투었으나, 서울행정법원은 2018. 9. 13. 그 청구를 기각하였고(위 법원 2017구합4529 판결), 서울고등법원은 2019. 5. 29. 항소를 기각하였으며(위 법원 2018누66076 판결), 대법원은 2019. 8. 30.자로 그 상고를 기각하였다(대법원 2019두44385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).]』

3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,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[redacted]

판사 [redacted]

판사 [redacted]